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- 721호

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
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

「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2호, 2022.01.2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. 12. 11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

1. 지정기관: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
2. 소재지: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(신서동)
3.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
 - 가. 정비사업 정책지원
 - 나.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
 - 다.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의 지원
 - 라.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운영지원
 - 마.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
 - 바.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
 - 사. 정비사업 현장조사
 - 아.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
 - 자.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
 - 차.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
 - 카.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
 - 타.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
 - 파.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제도에 관한 조사·연

구

- 하. 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
 - 거.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
 - 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
 - 더. 주택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)의 설계·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
 - 러.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
 - 머. 「주택도시기금법」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
 - 버.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
 - 서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
 - 어.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
4. 업무대행 개시일 : 고시일부터(별도 해지시까지)